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5 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기동민·한준호·김회재

이정문 • 김영배 • 인재근

김원이 · 황운하 · 강훈식

조오섭・정춘숙・도종환

양정숙 • 박용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,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주 본인이나 평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. 아울러,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 방점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 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,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"를 "관리업자(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자는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제2항) 중 "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"을 "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제4항) 중 "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"를 "관리업자"로 한다.

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단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제8항 중 "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"을 "제29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49조제4호 중 "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"를 "관리업자로"로 한다.

제50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

7의3.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

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.

3.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리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등) ① -----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 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 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 업자(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하게 한 관리업자는 제외한다)-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다.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<신 설> 점검 결과 소방시설등이 법령 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단에 따 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 업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거부 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.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 ③ 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

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	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에
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	관한 사항을
<u>과를</u>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	
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라 <u>관리업자나</u>	<u>⑤</u> 관리업자
<u>기술자격자</u> 로 하여금 점검하게	
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「엔	
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	
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	
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	
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	
정한다.	
정한다. 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	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
	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	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	(현행과 같음)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8 <u>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</u>	(현행과 같음)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	(현행과 같음)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	(현행과 같음)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 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	(현행과 같음)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 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 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(현행과 같음) ⑧ <u>제29조제2항</u>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 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 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(현행과 같음) ⑧ <u>제29조제2항</u>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 략)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 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 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(현행과 같음) ⑧ <u>제29조제2항</u>

4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 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하게 하지 아니한 자

5. ~ 7. (생략)

제5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8. ~ 11. (생략)
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4 <u>₹</u>	<u> </u>
<u>리업자로</u>	_
5. ~ 7. (현행과 같음)	
제50조(벌칙)	_
/ (1500工(豆 寸 <i>)</i>	
	_
1. ~ 7. (현행과 같음)	.1
<u> 7의2.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변</u>	
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	<u> </u>
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	틸
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히	<u>카</u>
지 아니한 관리업자	
<u>7</u> 의3.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변	<u> </u>
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형	<u>카</u>
처우를 한 관계인	
8. ~ 11. (현행과 같음)	
제53조(과태료) ①	_
	_
	_
1 0 /처체되 가 0)	
1.·2. (현행과 같음)	٤
3.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3	
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및 조	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9. (생략)
- 10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11. ~ 13. (생략)
- ③ (생 략)

치에	관한	사항	을	보	고히	-지
아니형	한 관리	업자	또:	는	거짓	٥
로보	고한 구	····· 관리업	자			

- (2) -----------
- 1. ~ 9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- 11. ~ 13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